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년 3월 pp.9~42
한국세무학회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서희열** · 심충진*** · 심태섭**** · 최천규*****

<요 약>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증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산업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보험의 역할을 위험보장 기능, 생활안정 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모집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10년 미만 보험상품에 대해서 기능별로 차등적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첫째,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하는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계획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때, 국민의 생활안정 유지,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위험보장 기능강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생

* 본 논문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수정·요약한 것이다.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suhhy@kangnam.ac.kr, 031-280-3560, 제1저자

***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chjshim@konkuk.ac.kr, 02-2049-6049, 교신저자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tsshim@dankook.ac.kr, 031-8005-3429, 공동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지방세 연구소, choi1009@uos.ac.kr, 02-2210-2723, 공동저자

명보험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제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생명보험산업, 보험금, 교육세, 보험료 소득공제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방법

1960년대 이후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 수입보험료에서 상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이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많지 않았다. 특히, 생명보험산업이 국가 경제 및 국민 후생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

생명보험산업이 추구해야 할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사람이 미래에 어떤 위험에 부딪혔을 때 보장을 받음으로써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위험보장기능이 있다. 둘째,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성 기능이 있다. 사회보장성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셋째,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와 저축의 기능이 혼합된 생활안정의 기능이 있다. 현재 보험상품의 판매증가 추세를 보면, 생활안정 기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성 기능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판매는 미흡한 실정이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보장 기능, 사회보장성 기능 및 생활안정의 기능 중 어느 기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된다. 위험보장의 기능은 대부분 사망보험금과 관련되어 상속세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보장성 기능은 노인 및 장애인 관련 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생활안정의 기능은 연금보험 및 저축성보험과 관련이 있으며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위 세 가지 기능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조세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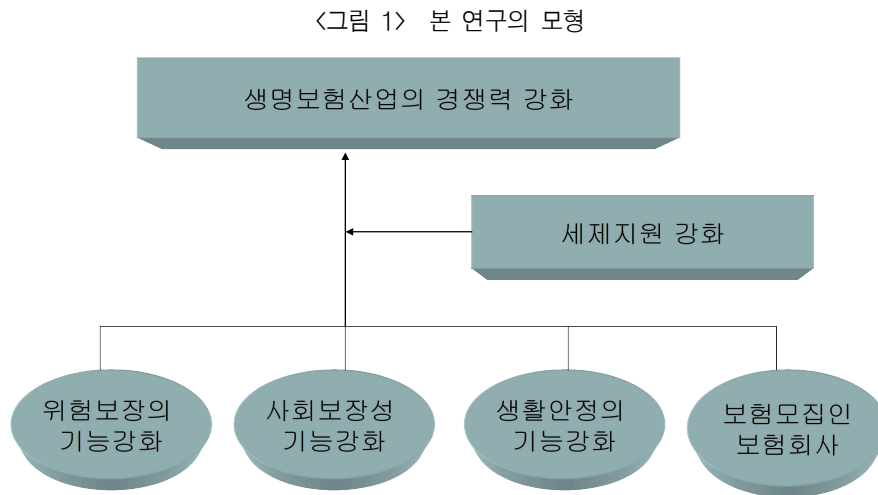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과 관련된 세제중 해당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우선, 단기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간에 확대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 및 상속세공제확대를 통하여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인¹⁾이 다른 종합소득자에 비해서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세 등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증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산업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생명보험산업이 추구해야 할 위험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성 기능 및 생활안정의 기능 증대를 통해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산업의 운용 주체인 보험모집인과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자, 보험모집인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세제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모형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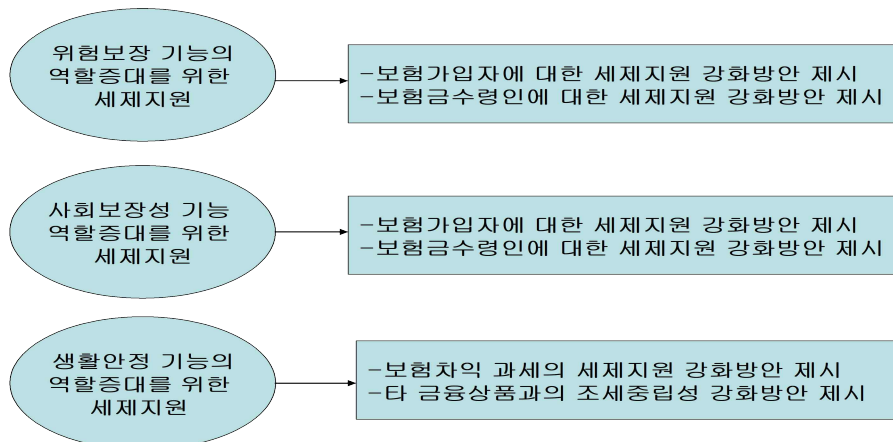
1) 세법상은 보험모집인으로 하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법상 표현인 보험모집인으로 하였다.

첫째, 생명보험산업의 본연의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제지원 강화방안이다. 여기에는 생명보험산업의 사회적 기능 중 위험보장의 기능강화,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생활안정의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방안이다.

가.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설계는 <그림 2>와 같다. 위험보장의 기능강화,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생활안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각각의 기능에 맞게 보험가입자, 보험금수령자, 보험차익 및 타 금융상품과의 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연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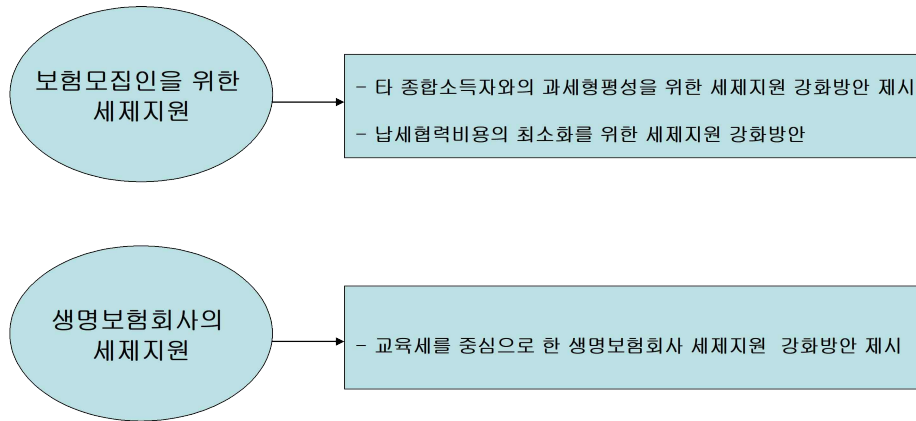
<그림 2> 생명보험산업의 역할과 세제지원 강화방안



나. 생명보험산업의 운용 주체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방안

생명보험산업의 운용 주체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설계는 <그림 3>과 같다.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 보험모집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방안



II. 생명보험산업과 관련된 세제현황

1. 생명보험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세제현황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세제는 법률상 독립된 법으로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세법 전체에 걸쳐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세제는 생명보험계약의 흐름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는 세제, 보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는 세제, 그리고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모집인의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험료 납입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와 보험금 수령시 해당 보험금에 대한 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의 입장에서 계약자가 납부한 수입보험료에 대한 세제,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의 경우 보험모집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생명보험관련세제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보험관련세제의 요약

구 분		관련 세제		주요내용	근거법
보험 계약자 관련세제	불 입	보험료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연 100만원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연 100만원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개인연금보험		연 300만원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1항
	수 령	보험차익과세*		10년 이상시 비과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개인연금보험		연금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제20조의3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 전액공제 2,000만원 초과 : 20%공제 (2억원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장애인보험금공제		연 4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세금우대종합저축		9%의 저율분리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근로자우대저축 등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보험모집인세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자	소득세법 제73조
보험사업자세제	법인세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0조
	보험료수입에 대한 교육세***		보험료수입 등의 0.5%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을 초과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임(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 최근 정부에서는 보험료수입에 대한 교육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생명보험산업과 관련된 OECD 각국의 세제현황

가.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과세

생명보험이 갖는 사회적 역할 때문에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는 생명보험계약자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시행중인 세제혜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

생명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의 현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검토된 24개의 OECD국가 중 14개의 국가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이외의 나머지 OECD국가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혜택은 생존급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대하여 부여된다. 이에 비하여 사망급부금의 제공이 주목적인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표 2> 주요 OECD 국가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상 처리*

국 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상 처리
호 주	일반적으로 비공제이나, key-man insurance(종업원의 사망이나 불구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장하여 주는 보험)인 경우는 예외
오스트리아	공제가능(최대 €2,920, 배우자의 소득이 적으면 추가로 €2,920,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1,460)
벨기에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공제
캐나다	비공제
덴마크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공제
핀란드	일부만 공제허용
프랑스	일정조건에 맞는 보험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제허용
독일	보험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특정금액을 공제
아일랜드	2001년 이전 가입분에 대하여는 불공제. 2001년 이후 일정금액을 공제
이태리	2001년 이전 가입분에 대하여는 19%의 세액공제(€1,291 이내). 그 이후의 금액은 불공제
일본	개인가입자에 대하여 ¥50,000을 공제
한국	개인가입자에 대하여 ₩1,000,000 공제
룩셈부르크	최대금액까지 공제
멕시코	비공제
네덜란드	비공제이나, 연금수령액은 예외

〈표 2〉 주요 OECD 국가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상 처리* (계속)

국 가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상 처리
뉴 질 랜 드	비공제(단, key-man insurance는 공제)
폴 란 드	비공제
포 르 투 갈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
스 페 인	비공제
스 웨 덴	비공제
스 위 스	공제하나, 주별로 차이가 남
터 키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
영 국	비공제(일부 연금은 공제)
미 국	비공제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2007) 및 OECD(2001).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가 수령하는 각종 수령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생존 급부금(living benefits)에 대한 세제상 처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사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급부금이 보험료불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한다. 이러한 급부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며, 각 항목에 대한 주요 OECD 국가의 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증식이자(inside interest build up)에 대한 세제

일부 국가에서는 사망보험금이 큰 경우나 지나치게 보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증식이자에 대한 과세를 한다. 그리고 일부국가에서는 보험회사로 허가받지 않은 보험업자에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과세하거나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러한 세금은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세금에 추가적으로 과세된다. 이러한 이자증식분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자증식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는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OECD 2004, 235). 또한 이러한 세제혜택은 은행 등의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보험상품이 보다 유리하게 취급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특혜를 사회보장차원에서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를 통하여 가족들이 재정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중도해약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이자증식분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이자증식분에 대해

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이자증식분에 대하여 과세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보험만기에 보험회사에게 과세함으로써, 보다 간단히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증식분을 포함한 급부금에 대하여 주요 OECD국가의 규정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나) 배당금

OECD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금이란 보험상품을 만들 경우 처음에 예상했던 사망률, 이자율 등이 보험기간 중 변경될 경우 배당금형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자배당금에는 일반적인 주식배당금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계약자가 초과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배당액 가운데 투자수익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김성규 2001, 7). 그리고 불입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이자증식분이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배당금에 대한 일반적인 비과세방법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일부 OECD 국가에서처럼, 앞의 불입보험료와 이자증식분에 대한 조건이 달라진다면,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과세되고 있다.

(다) 연금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연금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의 경우 연금지급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과세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여 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금기간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불입기간동안의 이자증식분은 다른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세무상으로 처리된다.

(3) 사망보험금(death proceeds)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급부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만일 보험가입자 생존시 이자증식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자의 사망으로 소득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과세당국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여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많은 OECD국가(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및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표 3〉 주요 OECD 국가의 급부금에 대한 세제상 처리

국 가	이자증식분에 대한 과세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
호 주	과세안함	과세안함(예외 :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최초수익자와 실제수령자가 다른 경우)	과세안함
오스트리아	과세안함	과세안함(단,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과세안함
벨 기 에	과세안함	이자소득으로 15%를 원천징수	과세안함(상속세로 과세)
캐 나 다	과세안함(단, 저축성의 경우는 과세하며, 보험회사 투자수익에 15%를 과세)	과세함	과세안함(저축성은 제외)
덴 마 크	과세함(15%를 보험회사를 통하여 과세)	연금은 38%~59%로 과세, 일시금은 40% 과세, 공제대상인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은 과세	좌동
핀 란 드	과세안함	과세함	과세안함
프 랑 스	과세안함	일부(8년 미만)에 대하여만 과세함	과세안함 (단, 거액인 경우 사망연령에 따라 차등과세)
독 일	과세안함	과세안함(일부연금은 제외)	과세안함(단, 상황에 따라 상속세과세)
아 일 랜드	2001년 이후 과세안함	과세함	과세안함
이 태 리	과세함(지급시 12.5%)	과세함	과세안함
일 본	과세안함	¥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세율의 1/2로 과세	과세안함(상속세로 과세하며, 일부금액 공제)
한 국	과세안함(단, 저축성 제외)	과세안함(단, 저축성 제외)	과세안함
룩셈부르크	과세안함	과세안함	과세안함
네덜란드	과세함	과세함	과세함
뉴질랜드	과세함	과세안함	과세안함
폴란드	과세함	과세함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과세함
포르투갈	과세안함	과세함	과세안함(인지세 과세)
스페인	일반적으로 지급시까지 과세안함	과세함(18%)	과세안함(상속세 과세)
스위스	과세안함	과세안함(일정한 조건이 있음)	과세함
터키	과세안함	과세함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만 과세함
영국	과세함	과세안함(단, 비적적인 경우는 과세)	과세안함(상속세 과세)
미국	과세안함(단, 저축성 제외)	과세함	과세안함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2007) 및 OECD(2001).

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과세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납입보험료에 대한 과세와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로 나뉜다.

(1) 보험료수입에 대한 과세(premium taxation)

많은 OECD 국가에서는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보험료에 대한 과세가 일반적이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인지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수입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가 된다. 이는 원보험회사가 이미 해당 보험료수입에 대해 과세를 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금과 관련된 수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보험수입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2)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income taxation)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다른 법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과세한다. 과거에는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총수입(보험료수입+투자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는 소위 I-E approach(투자수익-비용)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입금액은 투자수익과 보험료수입의 합계액이다. 각 사업연도의 준비금증가, 각종 운영비용, 배당금지급액, 재보험료 납부액 등은 일반적으로 공제된다. 다른 공제액도 있으면, 결손금 공제제도도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상 처리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OECD 국가의 납입보험료와 수입금액에 대한 세제상 처리

국 가	보험료수입에 대한 과세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기준	최고세율
호 주	과세함 (10%—상황에 따라 조정)	투자수익—비용	30%(연금은 0%)
오스트리아	과세함 (4%, 단 10년 미만은 11%)	총수입	25%
벨 기 에	과세함(개인—1.1%, 그룹 보험—4.4% 예외적으로 4% 과세하는 경우)	총수입	39%
캐 나 다	과세함 (지역에 따라 2—4%)	총수입	주세와 지역세를 합하여 32.02—38.37%
덴 마 크	과세안함	총수입	25%
핀 란 드	과세안함	총수입	26%
프 랑 스	과세안함	총수입	34.43%
독 일	과세안함	총수입	39—42%
아 일 랜 드	과세안함	총수입	12.5%
이 태 리	과세안함	총수입	33%
일 본	과세안함 (일부 도에서는 과세)	총수입	36.21%
한 국	과세함(0.5%)	총수입	14.3%(1억까지)+27.5%
룩셈부르크	과세안함	총수입	30%
네 덜 란 드	과세안함	총수입	과세소득에 따라 20—25.5%
뉴 질 랜 드	과세안함	총수입	33%
폴 란 드	과세안함	총수입	19%
포 르 투 갈	과세함(0.046%)	총수입	25%(지방세 1.5% 별도)
스 페 인	과세안함	총수입	32.5%(2007), 30%(2008)
스 위 스	과세함 (5%, 1회성보험은 2.5%)	총수입	주별로 13—29%
터 키	과세안함	총수입	20%
영 국	과세안함	투자수익—비용	20% / 30% (보험계약자 / 주주계약자펀드)
미 국	과세함(주별로 1—3%)	총수입	35%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2007) 및 OECD(2001).

Ⅲ.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 강화방안

1.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가. 저축성 보험차익 과세제도의 개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란 일정기간 미만 유지된 단기저축성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과세하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보험만이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대상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해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이를 “보험금”이라 함)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를 “보험료”라 함)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단기 저축성 보험차익의 경우 과세대상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단기 저축성 보험차익의 과세대상

보험계약시기	계약일부터 만기(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
1991. 1. 1~1994. 9.30	3년 미만
1994.10. 1~1996. 5.12	5년 미만
1996. 5.13~1998. 3.31	7년 미만
1998. 4. 1~2000.12.31	5년 미만
2001. 1. 1~2003.12.31	7년 미만
2004. 1. 1 이후	10년 미만

나. 보험차익에 대한 외국의 세제

주요 OECD 국가의 경우, 중도해약이나 만기 등에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표 6>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6> 주요 OECD 국가의 보험차익 과세여부

구 분	국 가
비과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
과 세	벨기에, 캐나다 등
일정조건하의 보험차익만 과세	호주,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단기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8년 미만,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10년 미만의 보험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연금성격의 보험(12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양로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유사상품으로 취급된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20% 원천분리과세가 되고, 그 이외의 저축성보험은 일반 보험차익과 동일하게 일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원천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성 보험 등은 일시불로 납입하더라도 종신연금(無期形)과 일시불로 납입하지 않는 양로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有期形)에 대해서는 그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시소득 $[(\text{만기보험금}(\text{해약반환금}) - \text{납입보험료} - \text{특별공제 } \text{¥}500,000) \times 1/2 = \text{일시소득}]$ 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산출된 일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되고 있다. 일시소득은 이자소득 내지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하며, 일시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나 담세력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1/2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그 보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과세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보험상품의 성격에 따라 과세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과세는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보험적(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저축성부분(자산증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보험성격에 따라 구분과세가 이루어지면 현재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시 문제점

<표 5>에서 보듯이 단기 저축성 보험차익의 과세대상으로 보험기간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정부부서에서는 이러한 과세대상기간을 축소하려는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에,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축소는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 서민층의 생활안정자금 마련의 기회 박탈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성향조사에서 민영생명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표 7>과 같이 파악되었다.²⁾

2)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매 3년마다 생명보험 성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에 이루어진 성향조사가 가장 최근의 성향조사이다.

〈표 7〉 생명보험 가입목적(복수응답)

가입목적	2003년도	2006년도
사고나 질병시 본인의 의료비보장	72.8%	64.7%
만일의 경우에 대한 가족의 생활보장	56.3%	45.8%
재해·교통사고시 일시적인 소득상실에 대비	26.1%	27.0%
노후의 생활자금 마련	14.8%	11.9%
자녀의 교육·결혼자금 마련	3.3%	2.6%

자료 : 2006 생명보험 성향조사(생명보험협회) p.35.

이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일반인의 생명보험가입의 주목적은 의료비나 가족의 생활비 보장이 다. 이에 생명보험은 일반 서민층의 생활안정자금 마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현행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축소·폐지된다면 보험가입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2) 장기보험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증가

장기보험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목적이 노후의 생활비 마련 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10년 이상의 장기보험 가입자가 2006년을 기준으로 75%로 나타나고 있다.

만일 현행 10년 이상 저축성상품의 비과세를 전면과세로 확대할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즉 노후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장기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보험가입자의 생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3)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장기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폐지된다면 장기보험료에 대한 수입보험료가 감소되어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산업자금의 공급이 축소될 것이며 장기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폐지하더라도, 변경된 제도는 새로이 계약을 하는 보험부터 적용되기에 실제 세수증대의 효과는 제도변경시점부터 10년 이후에나 발생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의 감소는 제도변경시점부터 예상이 되기에, 이러한 두 요인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산업자금의 조달에는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일 보험차익 과세가 실시될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와 대량 해약사태로 산업 및 정책 등에 투자된 금액을 어찌할 수 없이 회수하여야 하기에 이로 인하여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4) 은행권 등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타금융기관에서는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조세형평의 상실로 인한 금융기관 공정경쟁 기반 약화 및 금융구조의 왜곡을 초래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보험차익 비과세가 유지될 경우 향후 보험이 종합과세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의 은행권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위험보장과 사회보장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과 단지 재산증식의 성격을 가지는 은행상품과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은행상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보는 것에 근거한 주장이다. 두 번째로 현재 은행상품 중에서도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및 가계장기저축이자와 같이 기초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은행상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세제에서는 일반인이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하는 경우, 그 증권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 서민층이 노후나 위험 등 미래를 대비하여 현재의 소비를 줄여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기관간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즉 앞의 <표 7>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 가입자의 상당부분이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기간의 축소는 또 다른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만기가 10년 이상인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이 폐지된다면, 현재 비과세상품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권이나 증권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의 유지 등과 비교하여 보면 또 하나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5) 중·단기 세수 증대효과 미흡

만약, 2009년도부터 보험가입기간이 12년 이상 되어야 비과세 될 경우 현행 세법 적용과 비교할 때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11년차와 12년차에 해당되는 2019년, 2020년에 발생한다. 또한 보험가입기간이 15년 이상 되어야 비과세 될 경우로 변경하더라도, 현행 세법을 적용과 비교할 때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11년차부터 15년차에 해당되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발생하게 된다. 즉, 2018년 이전에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현행 세법에 의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기간을 2년 또는 5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중·단기 세수 증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간의 변경은 중·단기의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축소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 저축성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현행 보험차익 과세체도를 유지하는 방안, 둘째, 보험차익과세의 체계를 보험상품의 기능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이다.

(1) 현행 보험차익 비과세체도의 유지 및 비과세기간단축 방안

퇴직연금제도 못지않게 생명보험산업도 사회보장기능, 사회보장성 기능 및 생활안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더불어 생명보험산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생활안정, 사회보장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체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사회복지 및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행 보험가입기간 10년 미만에 대하여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기간의 단축을 고려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과세대상인 보험기간은 최초 3년에서 현재 10년으로 되었지만, 아직도 국가가 전적으로 국민의 사회보장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행 10년을 단축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단 직전의 규정인 보험가입기간 7년 이상인 보험으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및 7년 미만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기능별 차등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7년 미만 보험상품에 대한 기능별 차등적 과세체계의 적용

생명보험 상품별로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즉, 생활안정 기능, 저축성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별로 과세체계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생명보험의 사회적 기능별로 과세체계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상품 기능별로 과세체계를 차등화한다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과 재산증식이 강한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과세체계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면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정 기능, 저축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을 가진 보험상품을 구분하여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생활안정 기능의 보험차익과세에 대한 정책적 제언

생활안정 기능이 강한 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은행 저축상품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같은 논리로 생활안정 보험상품에 대한 비과세 등은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생활안정 보험상품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일본에

서 부여하고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참조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 금융유사상품이 아닌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과세시 특별공제 ¥500,000과 보험차익에 대하여 1/2과세를 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한 과세체계로 이해가 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연금 등 생활안정 기능의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천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나)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차익과세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저축성 보험상품도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과세여부 보다는 보험가입자의 소득수준, 보험금액의 크기, 보험금 지급목적이나 형태 등에 의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하여만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금융유사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20% 원천분리과세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 대하여는 ¥500,000의 특별공제를 한 후의 보험차익의 1/2만을 종합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보험차익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 없이 금융소득 4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세체계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개정방향으로 일본과 같이 비록 저축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공제제도의 도입이나 현행 보험차익 중 일부를 과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 사회보장성 기능을 가진 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한 정책적 제언

현행의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보다는, 사회보장성 기능을 갖는 보험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차익을 일시에 폐지 또는 축소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비과세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하여는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가. 우리나라 보험료 소득공제 현황

(1) 우리나라 보험료 소득공제 내용

소득세법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에도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2005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240만원) 중 적은 금

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³⁾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보험료공제에 대한 외국의 세제

(1) 보험료공제에 대한 OECD 주요 국가의 세제

주요 OECD 국가 중 보험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세제상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와 혜택이 없는 국가로 대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다(PricewaterHouse Coopers 2007).

- ① 보험료를 공제하여 주는 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2001년 이후), 이태리(2001년 이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 ② 보험료를 공제하여 주지 않는 국가 : 호주,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2) 보험료공제에 대한 일본의 세제

일본의 경우는 보험료를 생명보험료와 손해보험료로 나누어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료공제는 다시 일반생명보험료공제와 개인연금보험료공제로 나뉜다. 연간 공제액으로 일반생명보험료 연 ¥50,000 그리고 개인연금보험료로 연 ¥50,000을 별도로 공제하여, 총 ¥100,000(약 1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경우는 주민세에서 일반생명보험료공제와 개인연금보험료로 각각 최고 연 ¥35,000까지 공제하여, 총 ¥70,000(약 70만원)을 주민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료와는 별도로 손해보험료에 대하여도 추가로 ¥50,000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공제액에 대하여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공제액을 확대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생명보험료 ¥100,000, 개인연금보험료 ¥100,000의 총 ¥200,000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⁵⁾

다. 보험료공제에 대한 세제강화의 필요성

모든 OECD 국가가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3)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이다.

4) 손해보험료공제는 본래 화재 등의 손해로부터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 최고¥50,000까지 공제가 되었다. 그러나 2007년분부터 지진보험료공제로 대체되었으며, 최고 ¥50,000까지 공제하여 주고 있다 (水野忠恒 2007, 271).

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入江一成(2005)를 참조하였다.

이유로 생명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보험료공제는 필요하다(Skipper 2004). 첫 번째로, 보험료공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보장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에,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보장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을 통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보장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험은 국가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에 보험료 지출에 대하여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국민 개인의 자조노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료 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명보험공제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위험보장에 대한 국민의 안심감을 끌어냄으로써, 민간지출의 증대를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험료공제 확대를 통하여 생명보험 등을 통한 사적 보장 영역을 확대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 보장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⁶⁾ 이에 현재의 생명보험료 공제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

라. 보험료공제에 대한 세제강화 방안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생명보험료에 대한 세제강화 방안으로 다음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실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중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충분한 보험료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우선, 생명보험의 가구당 가입률이 이미 90%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보험료 지출액도 월평균 38만원(연 464만원)에 이르고 있다(2006년 기준). 또한 자동차보험의 1인당 평균 보험료가 60만원대 후반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생명보험상품만으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소득공제 금액으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료공제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종류별로 공제한도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가)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소득공제 분리

현재 자동차 보유가 일반화 된 상황에서 각 개인별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60만원대 후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일반보장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득공제로서의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⁷⁾

6) 이러한 주장은 入江一成(2005)의 주장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7) 자동차보험을 분리할 경우, 영업용이나 업무용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교통 및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

(나)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의 소득공제 분리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은 그 보험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배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보험을 하나로 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세제는 보험가입에 대한 다양한 목적을 가입 보험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요구를 갖는 보험가입자의 위험보장이나 생활 안정에 세제혜택이 기여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확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차원에서 소득공제혜택 대상 확대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현행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소득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장애인보험 소득공제혜택 대상을 장애인이 가입하는 민영보험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위험보장이나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부조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줄 수 있다.

둘째로 현재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가고 있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보다 많은 금액으로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강화방안

가. 우리나라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현황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나. 주요 OECD국가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현황

(1) 주요 OECD 국가

주요 OECD국가에서는 상속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대표적인 국가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 그리고 미국을 예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체 혹은 일부의 금액

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Skipper 2004, 239).

(2) 일본

일본의 경우도 다른 OECD 국가처럼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망보험금비과세금액은 <표 8>과 같이 변화하였다.

<표 8> 일본의 사망보험금 비과세 공제한도의 추이⁸⁾

시 기	사망보험금 비과세제도의 공제한도액
1937년 까지	전액비과세
1938년	¥ 5,000
1947년	¥30,000
1948년	¥50,000
1950년	폐지
1951년	수령인 1인당 ¥ 100,000
1952년	수령인 1인당 ¥ 200,000
1953년	수령인 1인당 ¥ 300,000
1954년	수령인 1인당 ¥ 500,000
1965년	수령인 1인당 ¥1,000,000
1967년	법정상속인수×¥1,000,000
1971년	법정상속인수×¥1,500,000
1975년	법정상속인수×¥2,200,000
1989년	법정상속인수×¥5,000,000

<표 8>에서 보듯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에는 법정상속인 별로 ¥5,000,000씩 비과세로 공제하여 주고 있다.⁹⁾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상속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공제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8) 入江一成 (2005)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9) 日本 相續稅法 第12條 第1項 第1号

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강화방안

보험금의 경우는 다른 금융재산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현재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세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사망보험금을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상속공제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금융재산과는 달리 보험금은 국가의 공적사회보장을 보완하는 기능과 상호부조의 원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도 상속인 1인당 공제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비과세공제의 예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족의 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세제에 감안하려면,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현재의 상속공제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가. 보험모집인에 대한 현행 세제

(1) 연말정산대상 보험모집인¹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및 간편장부대상자인 방문판매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한한다. 이 경우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보험모집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연말정산대상 방법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매월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3%(1998.4.30 이전 소득분은 1%)의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매월 지급된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합산하여 재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 또는 환급조정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인 보험모집인이 개별적으로 기장을 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은 다른 사업소득자와 달리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소

10) 소득세법 제73조, 시행령 제137조

특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서 정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은 1천분의 214,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1천분의 300임)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항목별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받는다.¹¹⁾

나. 보험모집인에 대한 일본의 과세 현황

일본의 경우는 보험모집인의 보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일본 보험모집인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보수 또는 요금은 급여로서 과세되고, 그 이외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등(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고정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급여소득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근로소득)와 보수(사업소득)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즉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된다. 일괄적인 기준금액으로 과세방법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보험모집인은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지급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다르다. 그러나, 소득의 노출 정도를 비교해 보면 보험모집인은 일반 근로자의 과세 소득 노출정도와 비슷하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단 하나의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¹²⁾ 보험모집인의 경우 소득의 지급처가 일정하여 세원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보험모집인은 소득의 지급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과세소득이 100%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보험모집인의 경우는 고소득 보험모집인과 달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일정소득 이하의 보험모집인에게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각종 특별공제인 의료비, 보험료, 그리고 교육비공제를 보험모집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표준공제의 금액도 현행 연 60만원을 근로소득자 수준인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11) 물론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의 경우는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100만원)를 함께 적용한다(조특법 제122조의3 2007.12.31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제11항).

12)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그러나 2008년 8월부터는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가 시행된다. 즉 생명보험(손해보험)모집인은 손해보험(생명보험)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때 단 1개의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방안 : 교육세를 중심으로

가.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 규정

현행 교육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¹³⁾ 그러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익금액 중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¹⁴⁾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근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¹⁵⁾ 최초 정부에서는 3개 목적세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교통세법 폐지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교육계 등 관련 이해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폐지 법률은 2009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 교통세법 폐지시기를 3년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¹⁶⁾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적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이상, 보험업계에 대한 교육세는 폐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 대체안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다. 만일 이렇게 되어 그 부가가치세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험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가가치세부과에 대한 것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점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주요 OECD 국가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과세 규정

일부 OECD 국가에서는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¹⁷⁾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일본(일부 도에서는 과세), 한국,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 등의 나라가 수입보험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익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

13) 교육세법 제3조 및 제5조, 시행령 제1조 및 제4조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5) 이러한 정부의 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부과는 폐지되며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신문보도를 참조하시오(매일경제 2009.1.15 : 조세일보 2009.4.29).

16) 이상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의 요약본 p.20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17) 각 OECD국가별 내용은 Skipper(2004)의 p.241이나, <표 4>를 참조하였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수입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는 원보험회사가 이미 해당보험료수입에 대해 과세를 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터키, 그리고 영국에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다. 수입보험료에 대한 과세의 평가

OECD국가 중 적지 않은 수의 국가에서는 수입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가를 평가하여 볼 필요가 있다.¹⁸⁾

수입보험료에 대한 과세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 번째로, 수입보험료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되기에, 저소득층인 보험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보험료가 많은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어 생명보험회사에게는 불공평하며 차별적인 과세이다. 세 번째로 노년층과 같이 일반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계층에 대하여도 불공평하며 차별적인 과세방법이다. 네 번째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관계없이 부과되므로 역시 불공평한 과세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세율은 낮아도 과세표준이 엄청나기에, 실제 과세당국에 들어오는 세금의 금액은 실로 막대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기에, 보험회사의 보험료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라.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 개선방안

(1) 개선 배경

교육세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1982년 신설된 목적세이다.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한 교육세는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 부과하는 소비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세는 교육을 위한 필요 재원의 총규모에 따라 납부대상기관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서비스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표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2) 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문제점 : 금융기관 간 납세형평성의 저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여신전문금융업 및 증권업 등 일부 금융업(증권업, 카드업(할부금융), 선물업 등)은 교육세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교육세 납부대상인 금융·보험업에 일부 금융업종이 배제되어 있어 금융기관간 납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넓은 세원” 차원에서조차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18) 수입보험료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은 Black & Skipper(2000)의 pp.969-970을 참조한 것이다.

최근 금융업간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특별한 명분없이 일부 금융업종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특혜시비 등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향후 금융업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인 만큼 교육세 과세 대상 역시 금융업 영역에 대한 납세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금융기관간의 납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가 개선되어야 한다.¹⁹⁾

(3) 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 개선 방안

(가) 현재 과세대상 금융업종에 대한 교육세 부과 폐지 방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세 그 자체의 기능에 대한 회의론으로 교육세에 대한 폐지주장²⁰⁾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현재 비과세대상 금융업종에 대한 교육세 징수 방안

현재 금융기관이 납부하고 있는 총 교육세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교육세 납부 금융기관의 교육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교육세 과세 대상이 배제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융회사를 교육세 과세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대신, 이들로 인하여 늘어난 세수를 고려하여 총세액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현행 금융·보험사업자의 세율(1천분의 5)의 하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다.

(4) 현행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개선 방안

(가)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의 문제점

현행 방식대로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을 반영할 경우 준비금의 산정은 부채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하여 지나, 실제 보험금 지급시점에서는 해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이는 책임준비금 평가(계상)시점과 채무액 확정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인데,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지급준비금은 당기말 잔액에서 전기말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세의 한 과세기간(3개월) 내에 사고와 보험금지급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위험보험료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이 당기말 지급준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 지급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보험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19) 2008년 말의 세법개정에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가 오히려 확대되어, 그 축소를 주장하는 본 연구의 주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

20) 이러한 폐지주장은 조세일보, 2008.5.29. “교통세·교육세 등 목적세 전면 폐지해야”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현행 교육세법 과세표준계산방식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보험회사의 (영업)보험료에서 저축보험료를 차감하고 여기에 자산운용수익을 합산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위험보험료는 과세표준계산시 저축보험료와 달리 차감되지 않고 있다. 위험보험료도 저축보험료와 동일한 성격을 갖기에, 위험보험료 또한 저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교육세 과세표준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즉 교육세는 회사의 외형매출에 기여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사 외형매출에 기여한 것이 없는 저축보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동일한 성격인 위험보험료가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나)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의 개선방안

우선, 미확정 채무인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확정채무인 보험금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의 방법은 실제 확정채무가 아닌 추정채무의 차감에 의한 과세표준산정 방법이므로 과세표준이 왜곡되는 결과 발생한다. 이에 따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보험금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의 대체계정인 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는 동일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에 대한 고려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과세표준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즉 교육세 과세대상 산정시, 현행의 위험보험료 과세표준 방식에서 위험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으로 할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행 보험차익과세는 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고 있고, 보험료공제액도 일괄하여 거주자 1인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금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금융재산공제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과세체계에서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험의 역할을 위험보장의 기능, 생활안정 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모집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축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행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보험가입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폐지할 경우 노후 생활자금의 실제 수령액이 낮아져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후의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보험에 가입을 한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것이다. 셋째,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수입보험료 감소 및 대량 해약사태로 인하여 생명보험산업의 투자재원이 감소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은행권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 농어촌 목돈마련 저축의 이자, 가계장기저축 상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은행권 등의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수입은 짧게는 2019년에서 길게는 2023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중·단기적 조세수입이 증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내 및 외국의 세제 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생명보험의 사회적 기능이 은행의 저축기능과 증권 주식투자자와 다르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생명보험이 사회보장기능 및 생활안정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보험차익의 비과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비과세기간인 현행 10년 보험기간을 7년 등의 보다 단기로 단축하는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7년 미만 보험상품에 대해서 기능별로 차등적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보험차익과세에 보듯이 금융유사상품이 아닌 보험에 대한 보험차익 과세시 특별공제 ¥500,000과 보험차익에 대하여 1/2과세를 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한 과세체계로 이해가 된다. 따라서, 교육연금 등 생활안정 기능의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천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보험차익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 없이 금융소득 4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또는 중합과세하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세체계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과 같이 비록 저축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행 보험차익 중 일부를 과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차익의 경우 지속적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보장성

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둘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1) 일반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 (2)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의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장애인보험 소득공제혜택 대상을 장애인이 가입하는 민영보험 전체로 확대하고, 현재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에 대하여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다른 금융재산과는 별도로 상속공제 한도를 두거나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하는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대신 현행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보험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혹은 현재 비과세 대상 업종에 교육세를 징수하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낮추는 방안이다. 둘째, 미확정 채무인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확정채무인 보험금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위험보험료도 저축보험료와 동일하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때, 국민의 생활안정 유지,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위험보장의 기능강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제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제19호.
-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생명보험 상품의 변천추이 및 시사점』 2007.12.21.
-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2009.8.25.
- 김수성, 2007. 「사학연금기금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철용, 2001.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생명보험세제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매일경제(인터넷판). 2009.4.29.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20.5%로 상향”.
-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www.samili.com).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 “보험용어사전” 참조.
- _____, 2006, 2006 생명보험 성향조사.
- _____, 2007,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 _____, 2007, 생명보험 Fact Book.
- _____, 2007,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 _____, 2007, FY2006생명보험통계연보.
- 이광봉·이창수·정창호(2003), “생보사 책임준비금의 평가를 위한 통계적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 이철재, 2008, 「세법강의」, 세경사.
- 조세일보. 2008.5.29. “교통세·교육세 등 목적세 전면 폐지해야”.
- _____. 2009.4.29. “다주택자 양도세증과 폐지 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자료실.
- 한국교육개발원(1978),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社)生命保險協會 <http://www.seiho.or.jp>
- 金子宏, 2006, 「租税法 第11版」, 弘文堂.
- 多久和弘一, 2007, 「保険稅務ハンドブック」, 保険毎日新聞社
- 碓井光昭, 2001, 「要説 地方稅のしくみと法」, 學陽書房
- 大倉眞人, 2002.6. “生命保險募集におけるモラル・リスクの研究－事前審査にかかるインセンティブの観点からの検討－”, 「日本リスク研究學會誌」第13卷第2号
- 福山圭一, 2005, “日本の年金制度”, 「年金と經濟」 Vol.24 No.3, 年金總合研究センター.
- 山本守之, 2007, 「体系法人稅法」, 稅務經理協會
- 小山隆洋, 2008, “被保險者の死亡に基因して支拂われる生命保險金で年金拂い されるものの課稅關係について”, 稅經通信 2008年03月号
- 水野忠恒, 2007, 「租税法」, 有斐閣
- 辻美枝, 2007.7, “契約者配当と課稅(上)－相互會社の取扱いを中心に－”, 大阪經大論集58卷1号(通卷297号): 234.

- 日本生命保險協會, 2007, 『生命保險會社のディスクロージャー～虎の巻』: 12
- 入江一成, 2005, “生命保險關連稅制を巡る議論”, 『生命保險經營』 第73卷 第3号.
- 猪ノ口勝徳, 2007, “現下の保險計理上の諸課題について－保險負債の時価評價問題について－”, 『ニッセイ基礎研所報』 Vol.47.
- 萩原邦男, 2001, “生保會社に對する「基礎利益」指標の導入”, 『ニッセイ基礎研REPORT』 2001年 9月号.
- Black Jr., K., and H. D. Skipper, Jr. 2000. Life & Health Insurance (13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Inc.
- OECD, 2001 「Taxing Insurance Companies」.
- Pope, T. R., K. E. Anderson, and J. L. Kramer. ed. 2008.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Inc.
- PriceWaterhouseCooper. 2007. Internation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at [http : //www. pwc.com](http://www.pwc.com)
- Skipper, H. D. 2004. The Taxation of Life Insurance Policies in OECD Countries
- Smith, J. E. 2007. West's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nd Treasury Regulations. Mason, OH : Thomson South – Weston.
- Swiss Reinsurance Company. 2000. World insurance in 1999 : Soaring life insurance business, sigma No4. 2007, p.27.
- _____. 2007. World insurance in 2006 : premiums came back to "life", sigma No.4. 2007.
- Willis, E., W. H. Hoffman, Jr., D. M. Maloney, and W. A. Raabe. ed. 2007. West Federal Taxation : Comprehensive Volume. Mason, OH : Thomson South – Weston.

Reform of the Taxation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Hi – Youl Suh* · Chung – Jin Shim** · Tae Sup Shim*** ·
Cheun Gyu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reform of tax system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ultimate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summarized the current Korean tax codes, and the taxation systems of major OEC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for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as follows : First, the current tax exemption policy for the insurance proceeds should be maintained. Second, according to their purposes, the savings – type insurance premiums with a maturity of less than ten years should be applied to different taxation systems. Third, the current deductions for insurance premium should be separated into each deductions for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casualty insurance. Fourth, the deduction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of insurance exclusively for handicapped persons should be raised.

Also, the current inheritance tax imposed on policy benefits should be reformed as follows : First, inheritance deduction of the death benefit should be set apart from other financial properties. Second, it needs to deduct certain amou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heirs, not to total amount of inheritance.

In addition, the same earned income deduction as that for wage earners should be given to solicitor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a certain amount.

Finally, the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bolish the current education tax for insurance companies, and to impose value added tax instead should be approached with prudence.

In the future, as economy develops and Korea enters into aging society, the commercial insurance, especially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make up for w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government lacks.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and the risk protection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be demanded at a even higher level.

*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Kangnam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Dankook University

**** Researcher, Tax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Therefore, the Korean tax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the various suggestions presented in the paper may be applied to the attention.

<Key words> life insurance industry, insurance proceeds, education tax, deductions for insurance premium